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2



 01

 사업현황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03 어업권 보상

04

이주대책

05

Q&A



01 사업현황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사업개요

- 사 업 명: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 위 치: 율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 사 업 량: 호안 축조 7.5km / 420만 m²
- 사업기간: 2022. 10. ~ 2027. 10.



01 사업현황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사업추진경위

■ 2022. 2. 14. : 보상 및 이주대책 위수탁 협약 체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여수시)

2023. 1. 3.: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2-159호)

2023. 12. 11.: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취소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142호)

■ 2023. 12.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 2023. 12. 29.: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3-151호)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____ 도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보상절차

보상

절차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신항만건설촉진법

02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0&A

보상절차

기본조사

- ◉ 보상계획 수립,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 ◎ 토지현황, 물건, 주거이전 대상자 현장방문 개별조사
- 토지 및 물건조서 및 주거이전실태조서 작성: 소유자 등 입회 하에 조사, 확인

보상계획 열람공고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및 개별 통지
- ◉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선정: 3개 법인(토지 소유자 추천, 전남도 추천, 여수시 선정)
- 주민 추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추천
- 보상액 산정: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___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보상절차

보상협의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수용 토지 등 권리 이전에 관한 합의
- 보상협의기간: 최소 30일 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다시 심사 후 감정평가 실시
-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가능

행정소송

- ◎ 수용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일정

사업인정 고시 (2023. 12. 29.)



토지,물건,거주 기본조사 (2024. 2.~7.)



보상계획열람 및 공고 (2024. 8.)



수용재결 (보상 미협의시)



보상협의 (2024. 11. ~)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

(2024. 9.~10.)



이의재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___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유형별 보상액 산정방법

피침해 권익		구 분	내 용	보상액 산정
	토지	취득하 는 토지	일반토지	감정평가
		사용하는 토지	일반사용, 공간사용	감정평가
		잔여지	가치하락분, 매수	감정평가
	ETIO	토지소유권 외 권리	지상권 등	감정평가
THALTH	토지외 재산권	건축물 등	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감정평가
재산권	세건권	기타권리	광업권, 어업권	감정평가
	부대적 손실	실비보상	동산이전비	감정평가
			이사비	시행자 산정
		日失 손실	영업손실, 축산업손실	감정평가
			농업손실, 휴직/실직	시행자 산정
		710 71*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시행자 산정
비재산권	주거용 건축물		이농비, 이어비	시행자 산정

___01 사업현황

___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토지 보상

■ 토지보상액 산정방법

①비교표준지 공시지가 X ②시점수정 X ③지역요인비교 X ④개별요인비교 X ⑤기타요인보정치

①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사업인정고시 전 공시지가 선택

② 시점수정 공시지가 시점부터 보상시점까지 가격변동을 지가변동률로 보정

③ 지역요인비교 인근지역 비교표준지가 없는 경우 비교

④ 개별요인비교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접면도로, 교통, 형상 등 비교

⑤ 기타요인보정치 평가토지의 인근지역 보상평가 선례 참작,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괴리를 보정 ____01 사업현황

____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업권 보싱

> > 0<u>-</u> 이주대책

> > > O5 Q&A

토지 보상

【 (객관적 평가기준) 일반적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 (현황기준평가) 가격시점상 현실적 이용상황 기준 평가
 - ※일시적 이용상황, 불법형질변경 토지 예외
- (나지상정평가) 지장물이 없는 나지상태 기준 평가

● (개발이익배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음

____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지장물 보상

● (이전비 보상원칙) 이전비가 취득비를 넘는 경우 물건 취득 가격으로 보상

분묘이전비 보상

- 연고자가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산정
 - 2023년 기준: 단장묘 405만원 / 합장묘 525만원

영업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사는 영업
 - 휴업보상: 휴업기간(최대 4개월) 영업이익 + 이전비용 + 부대비용
 - 폐업보상: 2년간 영업이익 + 고정자산 +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____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O5 Q&A

농업손실 보상

- (지급대상) 고시일 당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지급기준)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 금액의 2년분의 소득
 - ※ 2023년 기준: 전남(광주)지역 단가 3,190원/m²
- ▮ (지급제외대상)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등(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농민(농지 1,000m² 이상 / 1년 90일 이상 경작)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등

____01 사업현황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농기구 보상

- (지급대상) 당해지역 경작 농지의 2/3이상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호미,낫,괭이 등 소모성 단순 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

과수 · 묘목 · 입목 보상

- - ※ 임야의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반영

03

어업권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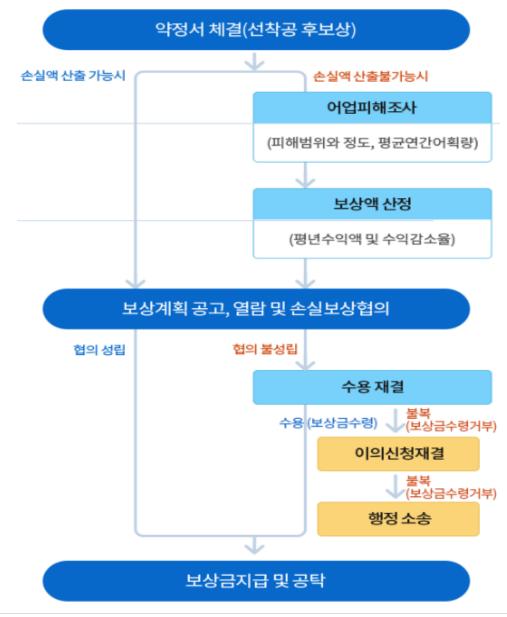
02 ____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상

> > 04 기주대책

> > > 05 n&a

보상절차



01 사업현횡

02 ----토지 및 지장물 보싱

> __03 어업권 보상

> > 0<u>-</u> 이주대착

> > > 05 Q&A

보상절차

감정평가기관 선정

- ◎ 2개 감정평가기관 선정(어민대표 추천 1, 여수시 선정 1)
- 대표 감정평가기관: 여수시 선정 평가기관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 선정

- 피해조사기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14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 중 선정
- 대표 감정평가기관 ↔ 피해조사용역기관 간 여수시 승인을 거쳐 용역계약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 ◎ 피해범위와 정도, 보상대상 물건 확정 및 손실 보상액 산정
- ◎ 보상액 산정: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 피해조사용역 설명회: 3회(착수,중간,최종)

보상계획 열람공고

- 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및 개별 통지
- ◎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상

> > 04 이주대책

> > > 05 Q&A

보상절차

보상협의 계약체결

- ◎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수용 토지 등 권리 이전에 관한 합의
- 보상협의기간: 최소 30일 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 수용재결: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다시 심사 후 감정평가 실시
- 이의재결: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가능

행정소송

- ◎ 수용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재결 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상

> > 04 -----이주대책

> > > O5 Q&A

추진일정

사업인정 고시 (2023. 12. 29.)



감정평가기관 및 피해조사기관 선정 (2024. 1.~2.)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2024.3.~2025.5.)



수용재결 이의재결

(보상 미협의시)



보상협의 (2025. 8.부터)



보상계획열람 및 공고

(2025.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01 사업현횡

02 토지 및 지장물 보싱

> <u>03</u> 어업권 보상

> > 04 이주대책

> > > 05 Q&A

어업피해 보상

- 보상대상: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적법한 어업권
 - ㆍ사업인정고시일(2023.12.29.) 이전부터 적법한 면허,허가,신고가 있을 것
 - ·실제 어업행위를 하고 있을 것
 - ㆍ당해사업 시행으로 인해 어업권의 소멸,정지,제한의 피해를 입을 것
- ▋ 피해정도 및 범위
 - : 해수부 고시 <u>피해조사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함</u>
 - ☞ (직접피해) 면허,허가,신고의 취소 폐업 보상
 - ☞ (간접피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간접피해 손실액 보상
 - 【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기준 】「수산업법」시행령 [별표10]
 - 1)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되는 경우
 - : 어업의 제한기간 또는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 3)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
 - :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이주대책

01 사업현횡

02 토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u>04</u> 이주대책

> > > 05 Q&A

이주택지 공급

- 공급기준 〈법정 최소기준〉
 - (공급대상자)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전(2022.12.29.)
 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 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 가옥이 철거되는 자
 - (택지공급) 1세대 1택지 공급

02 트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____04 이주대책

> > > 05 Q&A

주거이전비

- 가옥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2개월분
- 세입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
 - ※ 2023년 3인 가구 기준: 가옥주 9,609,080원 / 세입자 19,218,170원

이사비

■ (가옥주,세입자)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산정

[2023년 기준]

주택 연면적	이 사 비	주택 연면적	이사비
33 m² 미만	797,180	66 ~ 99 m² 미만	1,849,660
33 ~ 49.5㎡ 미만	1,233,110	99 m² 이상	2,466,220
49.5 ~ 66 m² 미만	1,541,390		

01 ----사업현횡

02 트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u>04</u> 이주대책

> > > 05 Q&A

이주정착금

지급개요

구 분	내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 하지 않은 경우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단, 그 금액이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 1천 2백만원으로 하고, 2천 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 4백만원으로 함)			

02 트지 및 지장물 보상

> <u>03</u> 어업권 보싱

> > 04 이주대책

> > > 05 Q&A

기타사항

- 토지・물건 · 거주자 기본조사
 - 실태조사 전 공문을 통해 방문일정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조사원 방문 시 현장안내 등 협조바랍니다.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
 - 향후 거주자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